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77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부산명지지구 A-5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106호(2020.12.30)로 승인 고시된 부산명지지구 A-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부산명지지구 A-5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,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A-5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)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